

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685569
등록번호	110111-6855691
상 호	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, 6층(개포동, 서울강남우체국빌딩)

공고방법	<del>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한국경제에 게재한다.</del>	
	회사의 공고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, 2개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할 경우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2019.03.28 변경 2019.04.12 등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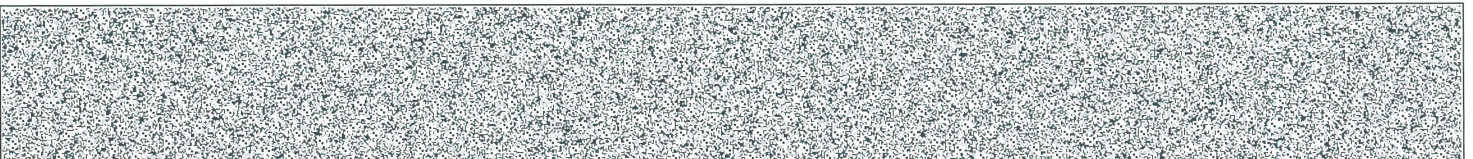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
--------	-----------	--

발행할 주식의 총수	<del>50,000,000 주</del>	
	80,000,000 주	2018.12.27 변경 2018.12.31 등기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	자본금의 액	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	<del>60,000 주</del>	금 <del>300,000,000 원</del>	
<del>보통주식</del>	<del>60,000 주</del>		
발행주식의 총수	26,260,000 주	금 <del>131,300,000,000 원</del>	2018.12.29 변경 2018.12.31 등기
<del>보통주식</del>	<del>60,000 주</del>		
<del>에이중우선주식</del>	<del>26,200,000 주</del>		
발행주식의 총수	49,794,397 주	금 248,971,985,000 원	2019.08.14 변경 2019.08.27 등기
보통주식	23,594,397 주		
에이중우선주식	26,200,000 주		

목 적	
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'부투법' 이라 한다.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.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.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	
1. 부동산의 취득, 관리, 개량 및 처분	<2019.03.28 삭제 2019.04.12 등기>
<del>1. 주택건설사업</del>	
<del>1. 부동산의 개발사업</del>	
1. 부동산의 개발사업(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신축, 증축, 개축, 리모델링하는 사업 포함)	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105090044010300241004220092615055876310101M011S1 1      발급확인번호 5699-AAXP-RRZK      발행일:2024/04/03



등기번호	685569
------	--------

<2019.03.28 추가 2019.04.12 등기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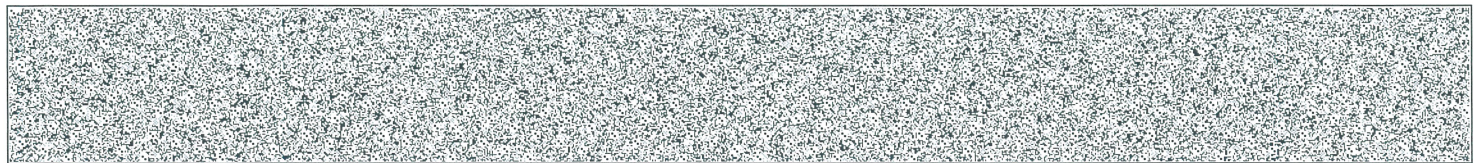
1. 부동산의 임대차
1. 증권의 매매
1. 금융기관에의 예치
1. 지상권.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.관리.처분
1.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.관리.처분

임원에 관한 사항	
<del>사내이사 김인권 640204-*****</del>	2018년 11월 15일 사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<del>카타바상무이사 조상현 661206-*****</del>	2018년 11월 15일 사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<del>카타바상무이사 조철희 670110-*****</del>	2018년 11월 15일 사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<del>감사 임세광 660415-*****</del>	2018년 11월 15일 사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대표이사 김인권 640204-*****	경기도 하남시 초이로80번길 31, 202(초이동)
	2018년 11월 15일 사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<del>감독이사 임세광 660415-*****</del>	2018년 11월 15일 취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	2021년 03월 29일 임기만료      2021년 04월 01일 등기
감독이사 심태용 780817-*****	2018년 11월 15일 취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	2021년 03월 29일 중임      2021년 04월 01일 등기
	2024년 03월 27일 중임      2024년 03월 29일 등기
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1101116*****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, 6층(개포동, 서울강남우체국빌딩)
	2018년 11월 15일 취임      2018년 11월 19일 등기
<del>감독이사 김명연 681202-*****</del>	2021년 03월 29일 취임      2021년 04월 01일 등기
	2023년 03월 30일 사임      2023년 03월 31일 등기
감독이사 한영식 631125-*****	2023년 03월 30일 취임      2023년 03월 31일 등기

**종류주식의 내용**  
에이중우선주식

①회사는 삼천만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중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에이중 우선주식은 누적적, 참가적이고, 의결권이 있다. 회사는 에이중 우선주식을 발행할 때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배당률(이하 “우선배당률”)을 정하되, 우선배당률은 에이중 우선주식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2.5%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

②회사는 매 결산기에 우선배당률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에이중 우선주식에 배당하고,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 발행가액의 연 10%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보통주식에 배당한



등기번호	685569
------	--------

다. 이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안분 배당한다.

③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(이하 “누적 미배당분”이라 한다)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,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④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.

1. 최우선으로,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(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2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,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에 우선 배당률과 같은 비율을 연 복리로 보유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수익에서, 청산 전에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된 이익배당액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3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,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4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,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에 10%의 비율을 연 복리로 보유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수익에서, 청산 전에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된 이익배당액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5. 전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안분 배분한다.

2018년 12월 27일 변경      2018년 12월 31일 등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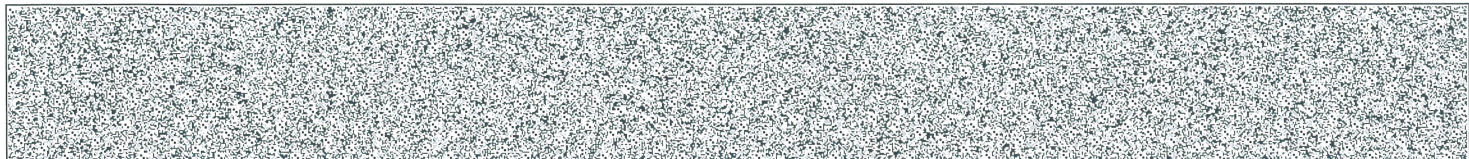
**기 타 사 항**

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 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
  1.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
  2. 주주총회의 해산결의
  3. 합병
  4. 파산
  5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
  6.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
  7.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
  8.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

회사성립연월일	2018년 08월 28일
---------	---------------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18년 08월 28일 등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-- 이 하 여 백 --





등기번호	685569
------	------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
수수료 1,000원 영수함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 
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  
서기 2024년 04월 03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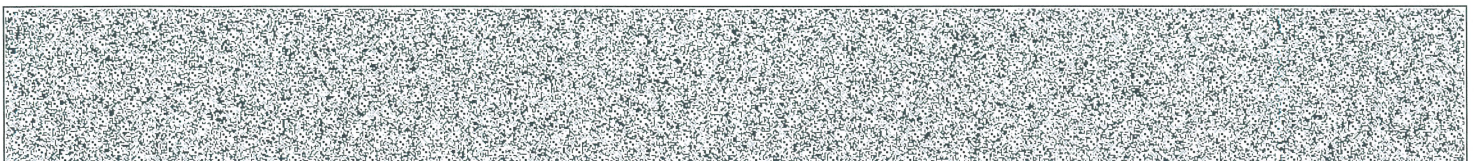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- \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\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105090044010300241004220092615055876310101M011S1 1

발급확인번호 5699-AAXP-RRZK

발행일:2024/04/03